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740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74096 판결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소4992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정

변론 종결 2020. 4. 22

판결 선고 2020. 5. 13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소4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 2쪽 제 11행의 "하엿다"를 " 하엿다" 로, 제 4쪽 제 13행의 " 영업영전화번호" 를 " 영업용전화번호" 로, 제4쪽 제19행의 "전화 번호"를 "전화번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재윤판사 전호재판사 유성 현